2023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예능분과 제2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23. 4. 27.(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김영운(분과위원장), 성기숙, 성애순,
원명(김종민), 정성숙, 전경욱, 최　헌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업무 절차

업무처리 절차		구체적인 실행 내용
ㅇ 시·도지사 추천 접수(전년도)	=	ㅇ 광역지자체 대상 신규 종목 지정 추천 접수
↓		
ㅇ 관계전문가 검토(전년도)	=	ㅇ 해당 종목 관계전문가 검토 실시 -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
↓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ㅇ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결과 검토
↓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	=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매년 1월 31일까지)
↓		
ㅇ 조사단 구성	=	ㅇ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ㅇ 관련 학회 등 추천,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 ※ 연구용역으로 진행 시 해당 절차 생략
↓		
ㅇ 종목 지정가치 조사 실시	=	ㅇ 전승가치(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대표성 등) 및 전승환경(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등 조사
↓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ㅇ 지정가치 조사 결과 검토 - 종목만 지정 시 : 지정 예고 여부 검토 -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시 : 인정 절차 진행 ※ 보유자(단체) 인정 절차 추진 시 인정검토 완료 후 관보 공고
↓		
ㅇ 종목 지정 예고 관보 공고	=	ㅇ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30일) 및 의견 수렴 ※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
↓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ㅇ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		
ㅇ 종목 지정 관보 고시	=	ㅇ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고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업무 절차

업무처리 절차	구체적인 실행 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 (매년 1월 31일까지)
⬇	
○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자 공모	○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 공모 게시, 신청서 접수
⬇	
○ 조사단 구성	○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 관련 학회 등 추천,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
⬇	
○ 보유자 인정조사(1단계) 실시	○ 서면조사(신청서 및 동영상 자료 포함)
⬇	
○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1단계 조사 결과 검토, 2단계 조사대상자 선정
⬇	
○ 보유자 인정조사(2단계) 실시	○ 현장조사(실연) 및 면담
⬇	
○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2단계 조사 결과 검토, 3단계 조사대상자 선정
⬇	
○ 보유자 인정조사(3단계) 실시	○ 심층 기량조사(실연)
⬇	
○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3단계 조사 결과 검토,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	
○ 보유자 인정 예고 관보 공고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30일) 및 의견 수렴 ※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
⬇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
⬇	
○ 보유자 인정 관보 고시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 당사자 및 해당 시도 통지 - 인정서 교부, 전승지원금 지급

목 차

【심의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	공개
【검토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대금산조’ 보유자 인정조사(2단계) 결과 검토	공개
2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비공개
【보고사항】		
1	전수교육학교 선정 결과 보고	공개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예능 2023-02-001

1.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유자의 명예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3년 전통예능분과 제1차 회의(‘23.2.23.)에서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유자의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를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23.3.9.~4.9.)하고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접수(‘23.2.8.)

- 대 상 자 : 김석명(보유자, ‘39년생, 남, ‘92.7.1. 인정)
- 신청사유 : 보유자 본인이 명예보유자 인정 요청

○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예능분과 제1차/‘22.2.23.)

2) 예고사항(문화재청 공고 제2023-114호, 2023.3.8.)

○ 대 상 자 : 김석명(보유자, ‘39년생, 남, ‘92.7.1. 인정)

○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유자 명예보유자 인정

문화재명	성명	기·예능	주소
고성농요	김석명(金石明)	앞소리	고성군 고성읍

-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예고기간 : 2023.3.9.~4.9.

○ 예고결과 : 의견접수 없음

라. 검토의견

○ 그 간의 경과와 예고 결과 등을 참고하여 명예보유자 인정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김석명을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가결 7명

바. 특기사항

○ 없음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예능 2023-02-002

1. 국가무형문화재 ‘대금산조’ 보유자 인정조사(2단계) 결과 검토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대금산조’ 보유자 인정조사(2단계) 결과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계획에 따라 보유자 인정조사 대상인 ‘대금산조’에 대해서 보유자 인정조사 2단계(현장조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유자 인정조사 3단계(심층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대금산조’

○ 지 정 일 : 1971.3.16.

○ 주요 전승자 현황

- 보유자(1명) : 이생강(‘42년생, 남, ‘96.12.10.인정)
- 전승교육사(2명) : 조철현(‘57년생, 남, ‘96.7.1.인정)
  이광훈(‘67년생, 남, ‘08.4.24.인정)

2) 추진경과

○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계획에 포함(‘20.1월)

○ 보유자 인정조사 조사대상자 신청 공모(‘20.4.9.～6.30.)

○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서면조사) 실시(‘21.2.26.)

○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결과 검토(무형문화재위원회, ‘21.4.9.)

○ 대금산조 보유자 인정 관련 검토(‘22.2.15.～2.23.)

○ 대금산조 보유자 인정조사(1단계) 결과 및 다음 단계 조사방향 검토(무형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22.10.7.)

○ 보유자 인정조사 2단계 실시(‘23.3.15.)

3) 보유자 인정조사(2단계) 조사개요

○ 일자/장소 : 2023.3.15.(수) /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

○ 조사자 : 관계전문가 4명
○ 조사대상자 : 2명

4) 조사내용
○ 조사방법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의 2단계 조사지표(개인종목)에 따른 전승기량 및 역량, 전승기반 평가 *비대면 현장조사(실연 및 면담)
○ 전승기량 실기능력 지표
- 전승기량 및 역량(80점) : 실기능력(40), 종목이해도(20), 교수능력(20)
- 전승기반(10점) :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
* 사전회의('23.1.19.) 의결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시설·장비 등 수준(10점)'은 조사지표 제외
* 사전회의 의결에 따라 2단계 조사지표를 적용하되, 총 합계 90점 만점을 최종 100점 만점 환산하여 적용
○ 지표별 평가방법
- '실기능력'은 대금산조 전바탕 실연
- '교수능력'은 제자(이수자 수준)를 대상으로 진양조 부분 15분간 시연
- '해당종목의 이해도' 및 '전승의지'는 면담을 통해 평가

라. 검토의견
○ 보유자 인정조사는 관련 규정(「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인종목의 경우, '서면조사(1단계)-현장조사(2단계)-심층조사(3단계)'의 단계별 조사를 실시하며, 단계별 적정기준 도달 시 다음단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함
○ 2단계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대금산조' 보유자 인정을 위한 다음단계 심층조사(3단계) 대상자 선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국가무형문화재 '대금산조' 보유자 인정조사 심층조사(3단계) 대상으로서 적격자 없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부결 7명

바. 특기사항
○ 없음

안건번호 예능 2023-02-003

2.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예능 2023-02-004

1. 전수교육학교 선정 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2023년도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을 위한 신규학교 선정 건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따라, 2023년도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을 위한 신규학교 선정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전수교육대학 기본계획 및 2017년도 시행계획 수립(‘16.12.)

○ 2017년도 전수교육대학 시범학교 선정(‘17.2.)

○ 2018년도 전수교육대학 신규학교 선정(‘18.2.)

○ 2020년도 전수교육대학 신규학교 선정(‘20.2.)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22.1.)

2) 2023년 전수교육학교 신규 선정 계획

○ 선정규모 : 신규 2개교 선정

* 기존 운영 : 한국전통문화대학교('17년 선정/한산모시짜기, 단청장, 제와장, 목조각장), 충북대('18년 선정/한지장)

○ 예산현황 : 351백만원

○ 지원규모 : 종목당 6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총3차 사업연도 * 1년단위 지원

3) 2023년 전수교육학교 선정평가

○ 평가 대상 : 3개교

○ 평가 방법

- 선정·평가위원회 위원별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신청 학교별 순위 결정하며 평균값이 60점 미만은 “탈락”으로 평가

4) 선정평가에 따른 후속절차

- 선정 결과 공고('23.3.16.)
- 신규 전수교육학교 업무협약 및 사업비 교부('23.4월)

라. 선정 결과

○ 2023년도 전수교육학교로 경상국립대학교(진주검무), 동국대학교(불화장) 2개교를 선정

마. 의결사항

○ 원안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접수 7명

바. 특기사항

○ 없음